

판례평석

## 방송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시 지급하는 경품의 상한 규제의 유효성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7누88963 판결에 대한 검토 -  
Review of Validity for the Regulation on the Bundled Rebate of  
Communication Services

- Review on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No. 2017Nu88963 -

박 규 홍(Kyuhong Park)\*

### 목차

- I. 들어가며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차별금지의 구체화  
로서 경품상한제
- II. 대상판결의 배경 - 방통위의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 III. 대상판결의 요지
- IV.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V. 결어

### I. 들어가며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차별금지의 구체화로서 경품상한제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1990년대 신세기이동통신 등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직접 단말기까지 공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용자는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정착은 한편으로는 통신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격차 등에 따른 이용

자 차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0년부터 이용약관을 통해서, 200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서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위 전기통신사업법의 지원금 규제는 2008년 일몰되었다가 2014년 단말기유통법의 도입으로 부활<sup>1)</sup> 후 현재는 다시 일몰된 상태이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문제는 모바일 외에 유선통신과 방송서비스의 결합상품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동통신단말에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결합상품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었다. 이에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시 지급되는 경품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이용자차별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sup>2)</sup>하여 왔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태도는 2012년 심결을 통하여 명확하게

- 1) 단말기유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로 지원금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었는데, 위 제도는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마844 결정에서 지원금 상한통제가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적절한 수단임이 인정된 바 있다.
- 2) 방통위는 경품 지급액 및 이용약관 외 요금할인을 합산한 금액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단품: 19만 원, 2중 결합: 22만 원, 3중 결합: 25만 원, 4중 결합: 28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Shin & Kim).

제시되었고 2016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이러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를 구체화하여 2015. 8. 6. 결합상품에 대한 지원금의 상한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 II. 대상판결<sup>3)</sup>의 배경 - 방통위의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방통위는 2016. 12. 6.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원고’)가 조사대상 기간(2015. 1. 1~2015. 9. 30.) 동안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이동전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의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경품 등(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직접 유통채널을 통해 모집한 가입자 군(群)과 간접 유통채널을 통해 모집한 가입자 군 간, ▲IPTV를 포함한 가입자 군과 IPTV를 포함하지 않은 가입자 군 간, ▲그리고 단품상품 가입자 군과 각 결합상품(2종 내지 4종) 가입자 군 각각의 내부 개별가입자 간 경품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일부 가입자에게는 상한 기준을 훨씬 미달하였고, 일부 가입자에게는 상한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하였음)함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마)목의 1)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에게 ① 경품 및 요금감면 제공중지,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③ 방통위의 내부제도 개선, ④ 이행

계획 수립 및 제출, ⑤ 이행결과 보고, ⑥ 과징금 45억 9천만원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다.

## III. 대상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서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인 경품상한제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판단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바탕으로 한 경품상한제의 위반이 곧바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방통위의 주장

방통위는 경품상한제에서 정한 금지행위 판단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한기준은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바탕으로 시장 현황, 경쟁 현황, 예측가능성 등 기타 제반 사정 및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그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품상한제를 위반한 행위는 곧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방통위의 논리는 가입자 1인에게 지급되는 경품 금액이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하면, 그 초과 비용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한 경품의 지급으로 인한 비용이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표 1〉 경품상한제의 합리성 부정 근거

1. 원고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1인당 평균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평균 가입기간은 약 1.6배 증가함<sup>4)</sup>

3) 대상판결의 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668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윤주호,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소고, 2017. 11.,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가 있다.

2. 통신사업은 사업 초기에 시설투자 등이 집중되므로, 시간이 경과하면 비용이 줄어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음
3. 원고의 경품은 본사 부담부분(본사 경품)과 대리점 부담부분(대리점 경품)으로 구분되는데, ㉠ '본사 경품'은 그 가액이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 하더라도 원고가 얻을 이익의 범위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입자 간 비용전가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 '대리점 경품'은 본사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4. 통신요금은 가격 결정상의 법률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인상이 어려움
5. 요금 인상시 오히려 가입자 이탈로 사업상 손실을 보게 될 우려가 있음
6.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소비자의 가격비교 등 정보 수집이 용이함

그 밖에 경품상한제가 사업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규범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한기준을 위반하는 경품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곧바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1항과의 법체계정합성을 고려할 때 경품상한제의 유효성 인정 여부

#### 1) 방통위의 주장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제3조 제3항의 '전기통신역무의 공평하고 저렴한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요금의 합리적 결정' 및 제4조 제1항의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단독 또는 제50조의 금지행위 규정과 결합하여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1항은 그 개념이 추상적, 유동적이고 관념적인 일반조항으로 각기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설정 기준 및 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에 대한 일반론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3항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받는 이용자는 일시적으로 통신요금이 감면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받지만, 이는 주무관청의 인가에 의해 통제되는 이용약관에 기재된 통신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품제공에 따른 사업자의 이익 감소로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효과는 이용자 전체에 미치므로 이용자 차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 즉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역무 이용에 관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제공되는 경품은 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품의 제공 여부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이용자들이 제공받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와 요금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어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업법의 법체계정합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사업법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이 단독으로 또는 이 사건 근거조항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4) 즉, 경품상한제에서 제시한 1인당 평균매출액이 산정된 2012년에 비하여 1인당 예상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 나. 헌법재판소의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합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품상한제의 유효성 인정 여부

### 1) 방통위의 주장

방통위는 헌법재판소가 2017. 5. 25. 선고 2014헌마844 결정에서, 단말기유통법상 방통위의 고시에 기한 지원금 상한규제가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법리는 경품 등 상한규제에 관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경품상한제에서 정한 기준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에 관한 가장 유효·적절하고 적법한 규제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 2)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단말기유통법은 법률의 문언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근거조항은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부당한 이용자의 차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당한 이용자의 차별’ 판단기준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 2014헌마844 결정의 논거를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다. 방통위의 경품상한제의 유효·적절성에 대한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 1) 방통위의 주장

방통위는 ① 결합상품판매에 대하여는 시장지배력의 남용 또는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더욱 강력한 통제장치들 둘 필요성이 있고, ② 이용자의 선택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으며, ③ 요금 구조가 복잡하므로 과도한 경품 지급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④ 과도한 경품제공은 자본력 열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에 해당하거나, ⑤ 경품 금액이

증가할수록 이용자들의 불평등도가 확대되고 통신사업자의 시장집중도가 심화된다고 주장하였다.

###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들고 있는 방통위의 주장은 이용자 이익저해와는 다른 규제목적인 공정경쟁 저해성에 대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근거법령에 따른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이를 이용자 차별행위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제재 목적과 수단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IV.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1. 대상판결의 기본적 입장에 대한 찬성

법원은 경품 제공 등 마케팅 방법을 선택할 권한은 당해 사업자의 경제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다.

2000년 무렵 KT의 민영화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공기업이 아닌 완전한 민간기업 간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도 이러한 시장기반(market-based) 규제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상 이를 제한할 때에는 명확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러한 접근태도는 타당하다.

## 2. 통신서비스의 필수불가결성에 따른 경품상한제의 정당성

### 가. 통신서비스의 필수불가결성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통신서비스’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2000년 무렵 초고속인터넷망의 보급으로 인한 정보화사회의 도래를 넘어, 2010년경을 전후하여 도입된 4G(즉, LTE)로 인한 인터넷의 모바일화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통신서비스’를 투사(透射)하였다. 또다른 10년이 지난 지금 통신서비스는 5G로의 진화를 통해 또다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다.

정보화사회가 대두된 2000년 무렵부터 헌법상 기본권으로 ‘정보접근권’의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보의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사회 각 집단사이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생산하고, 이는 다시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5)</sup>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정보의 평등을 헌법적 기본권의 논의로 끌어올린 것이 정보접근권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정보접근권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기초로 하며, 이는 다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의무(제3조 제1항)와 합리적이고 공평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제3조 제3항) 및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제4조 제1항) 제도로화되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of 근거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기준으로 차별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며(제28조 제3항 제4호), 또한 금지행위로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의 하나로 ‘이용자 차별’을 두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사업자에 대한 규제

는 ‘이용자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통신서비스의 필수불가결성에 따라 경제적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즉, 과도한 경품에 대한 규제를 이용자 차별의 관점에서는 통신서비스의 ‘보편성(universality)’을 구성하는 요소<sup>6)</sup> 중 ‘합리적 가격(afforda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 평가할 수 있다.

### 나. 경품상한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

방통위는 경품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사업자 간 경쟁의 활성화, 특히 이동통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공정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방송통신상품의 결합판매 과정에서 제공되는 경품의 제공기준을 제시한 경품상한제는 이동통신상품의 유통질서가 매우 혼탁하였던 2012년 무렵에 방통위의 심결을 통하여 시장에 공표되었으며, 그 이후로 방통위의 법집행을 통하여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는 방송통신시장의 구체적인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행위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지 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상적 규범이 수많은 영세사업자가 존재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유통시장에서 적절하게 작동하여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기준이 단순하고 쉬워야 한다. 경품상한제는 매우 단순한 기준을 제시하여 수범자에게 매우 높은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범위반 여부를 점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혼탁한 방송통신유통시장의 질서를 바

5) 김용조 외,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이해(2006) 432면. 김상겸, 정보기본권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2016) 104면에서 재인용

6) 보편적 역무(universal service)는 국민들의 사회·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기본적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가격(affordability)과 이용가능성/가용성(availability)의 보증을 통해 필수공익재인 통신서비스의 제공/이용에 있어서의 형평성(equity)과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을 유지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성 원리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로잡는데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경품규제의 변화 필요성 대두 및 대상 판결의 등장

#### 가.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한 경품상한제의 효용성 축소 또는 소멸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상품이나 방송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 이동통신사업자가 결합시장에서 결합상품 구성이나 자본력에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경품상한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경품제공을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경쟁의 차원에서 살펴볼 때, 자본력에서 열위에 있는 케이블TV사업자의 결합상품 보다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므로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의 전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수단으로 효용성이 인정되어 왔다.<sup>7)</sup>

그러나, 2019년 11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케이블TV사업자 인수가 진행되면서 시장구조가 개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이러한 효용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나. 경품상한제의 부정적 효과

아울러 앞서 살펴 본 경품상한제의 단순함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경품은 경제적 이익의 한 유형으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는데, 경품에 대한 상한규제가 엄격하게 작동할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 위축과 자율경쟁 제한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용자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

가 있다.

결국 시장구조의 개편으로 인한 경쟁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경품상한제의 정책적 효용성은 소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행정의 합목적성을 고려할 때 결합판매와 관련한 경품규제를 정비할 때가 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상당하였다.

#### 다. 방통위의 결합판매 경품고시 제정을 통한 경품상한제 폐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방통위는 2019. 2. 27. 과도한 경품 자체를 막는 방식에서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면 법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방통위고시)를 제정하였다(2019. 6. 6. 시행). 이로써 향후 통신서비스의 가입단계에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 즉 경품상한제는 사라졌다.

위 방통위고시가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상판결이 제도정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품상한제는 방송통신 전문규제기관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 기간 시장참여자들에게 규범력이 인정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도 상존하여 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형벌법규의 개정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이른바 ‘동기설’<sup>8)</sup>의 논리를 참고할 수 있다. 즉, 경품상한제는 도입 당시의 시장상황 하에서 이용자차별 방지 및 공정경쟁

7) 정경오 외, 방송통신 결합시장에서의 경품 등의 허용 범위 및 규제 근거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 방안 연구(2017), 84면 참조.

8) 대법원은 행정상 제재처분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구법에서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는 이른바 동기설을 취하고 있다.

보호라는 행정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수단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방통위가 최근 경품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경품고시를 제정하였다 하더라도, 정책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정적 규제수단의 변화로 봄이 상당하다. 즉, 방통위의 제도정비가 반드시 과거에 존재하였던 경품상한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라. 제도정비에 관한 대상판결의 의의

즉, 방통위는 대상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방송통신시장이 이동통신사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등 여러 제반사정의 변경을 고려한 제도정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대상판결은 이러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어

대상판결은 경품상한제가 규제의 합목적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과 더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요한 논거로 들어 방통위의 경품상한제를 근거로 한 제재처분을 취소하였다. 방통위는 대상판결에 대하여 즉시 상고하여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경품상한제 자체는 폐지하여 장래를 향하여 제도를 정비하였다.

방통위의 새로운 경품고시에 따라 앞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모든 이용자 간 차별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정비는 2019년 진행중인 이동통신사 중심으로의 방송통신시장 재편과 맞물려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